

“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”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업(화성시) -

경기도 ‘화성시’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「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장은 한국환경보전원 수도권광역지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27일
한국환경보전원장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명

-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(2차지원)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업

□ 사업기간

- 2025년 10월 ~ 2025년 12월

□ 주관기관

- 한국환경보전원 수도권광역지사(이하 “보전원”이라 한다)

□ 사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	총 사업비(자부담 제외)				비고
	총계	국비	도비	시비	
사물인터넷(IoT)	479,700	319,800	79,950	79,950	

※ 1차 사업 접수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, 선정 결과에 따라 2차 공고 사업비 배정액 달라짐

2 지원내용, 금액 및 지원조건

□ 지원내용
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 지원
 -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

□ 지원금액

-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및 방지시설 종류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 부착비용 최대 60% 지원 [40% 이상 사업자 부담, 부가가치세 제외(사업자 부담)]

□ 지원조건

-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(www.greenlink.or.kr, 이하 “IoT 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

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

□ 지원대상
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
 - “중소기업확인서” 중소기업부 등 발행 가능
- 『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』 제37조의3*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-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,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
□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
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
- 사업장은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, 설치계획서, 중소기업 확인증 등을 제출하고, 신청서 등 검토하여 사업 승인
-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사업장은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 업체와 설치계약을 직접 실시
 -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서(선정사업장-설치업체)에 자부담 및 사업비 부가세는 사업장이 사물인터넷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하고, 국고보조금은 사물인터넷 설치업체가 직접 수령 하도록 명시
-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 우선지원대상 기준으로 접수된 선착순으로 지원 사업장 선정(참여신청서 및 설치계획서 작성 양식에 적합하지 않거나, 구비서류가 누락 될 경우 사업 신청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)

□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 우선 지원 대상

※ (우선지원) 아래 사업장의 사물인터넷(IoT) 설치 우선지원

◇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의 사물인터넷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

(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 범위를 정할 수 있음)

- ① 기존 시설(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)
- ②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
- ③ 신규 가동개시 대상 시설
 - 2024년 7월 1일 이후 설치(변경)신고(허가) 사업장으로 가동개시 대상기업

4 제외대상 및 지원 유의사항

□ 제외대상

-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
-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 지방)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
- 4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(2023년 6월 30일까지 부착 완료 대상)
- 5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(2024년 6월 30일까지 부착 완료 대상)
 - 사물인터넷 부착 시기 위반사업장으로 지원 제외

□ 지원 유의사항(지원범위)

-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사물인터넷 설치지원을 우선 지원
 - 추가 배출구에 연결된 사물인터넷 지원서 제출 시 별도로 신청서 제출
 - 사물인터넷 지원신청서,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 배출구별 별도 이메일 제출
 -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전류계 최대 1개까지 지원 가능
 -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전류계, 순환펌프 전류계(흡수·세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), 전기집진 전류계, 차압계, 온도계, pH계는 각 1개 까지 지원 가능
 - 복수형 게이트웨이 미지원
-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·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 -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및 보전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
 -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

-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,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 및 보전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
-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(신고)를 이행하여야 하며, 미 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 - 변경 사항이 있을시 해당하는 사업장만 제출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
- 사업 승인 통지 후 15일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할 것
 - 불가피한 사유로 15일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 요청할 수 있음(1회에 한함)
 -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
- 착공신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
- 사물인터넷(IoT) 계측기는 반드시 “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(2025.6 제정)”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
- 사업수행 시 “시공업체 및 선정사업장”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·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산업안전 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- 공고문 외 기본 사업 내용은 “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”에 따름

□ 준공조건

- 제출된 사양대로 시공 및 운영될 것
 - 사업 승인 후 사양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(변경 근거, 예산 등) 보전원으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(사양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재설치 또는 보조금 제외)
- 사물인터넷(IoT) 설치 후 IoT 관리시스템(www.greenlink.or.kr) 측정자료 전송될 것

5 접수방법 및 절차

□ 공고 및 접수기간

○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5. 10. 27.(월)(09:00) ~ 2025. 11. 14.(금)(18:00)

※ 접수 기간 외 제출 서류 접수 불인정(신청서 메일 접수 날짜 및 시간 기준 적용)

□ 접수기관 및 방법

○ 접수기관 : 한국환경보전원 수도권광역지사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

▪ [E-mail\(iot@keci.or.kr\)](mailto:iot@keci.or.kr) 접수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
▪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(원본대조필 날인 제출)

-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: 화성시_사업장명_설치계획서

▪ 지원신청서 및 설치계획서 작성 양식에 적합하지 않거나, 구비서류가 누락 될 경우 사업 신청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○ 기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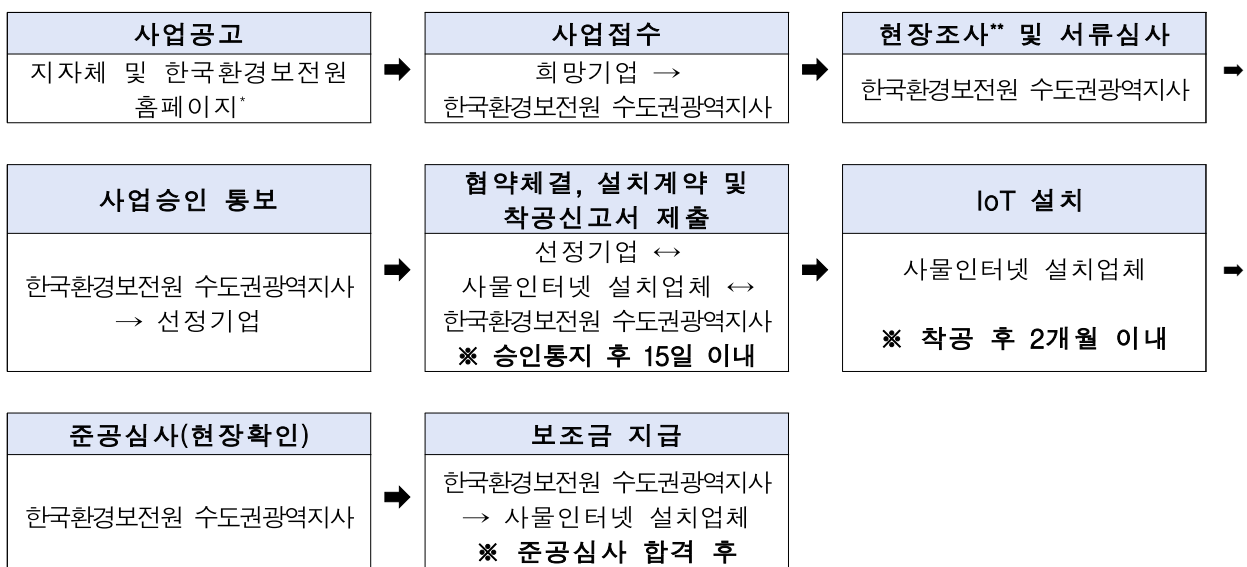
- 선착순 접수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

- 지자체 예산 한도 내 지원되며, 지원 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

-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E-mail 접수로 진행

○ 사업문의 : 한국환경보전원(☎ 070-5222-2136, 2123, 2126, 2122)

□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



*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eci.or.kr>,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메뉴 클릭)

**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 사업장 습식 배출시설의 경우 현장조사 가능(필요시)

□ 사업장 제출서류 ※ 사업신청 서류 양식에 맞춰 이메일 접수

○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
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[붙임 1]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[붙임 2]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[붙임 3]
- 사업자 등록증(배출업체, 시공업체) 사본
- 중소기업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)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계획서[붙임 4]
- 사물인터넷 계측기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(KOLAS) 성적서
-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증 사본(해당시)
-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(해당시)
- 이행확인서(배출업체,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)[붙임 5]
-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법인인 경우, 법인인감증명서)[붙임 6]
- 보조금반납확약서(배출업체)[붙임 7]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배출업체)

※ 제출 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,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

○ 사업승인 후 제출서류

- 협약서 및 착공신고서

※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(착공신고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)

○ 공사완료 후 제출서류

- 준공신고서, 공사완료보고서 및 사업정산 자료(공사비총괄내역서, 세금계산서 등)
- 사물인터넷(IoT) 부착완료 신고서 및 그린링크 전송확인서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자료 IoT 관리시스템(www.greenlink.or.kr) 전송 증빙자료

※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(준공신고서 및 공사완료보고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)

○ 준공심사완료 후 제출서류

- 보조금 지급 신청서

※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(보조금지급신청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)

《지원안내 및 서식》

-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eci.or.kr/>) 및 화성시 홈페이지
-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 상단 배너 알림마당 클릭!!
-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
6

사물인터넷(IoT) 설치비, 측정기기 구성 및 사양

□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

○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액

(단위 : 만원)

구 분		부착비용	보조금 지원액		
			계	국비	지방비
전류계*	배출시설	30	18	12	6
	방지시설	30	18	12	6
차압계(압력계)		40	24	16	8
온도계		50	30	20	10
pH계		100	60	40	20
IoT게이트웨이		160	96	64	32
VPN		40	24	16	8

* ID팬(유인송풍기), FD팬(압입송풍기)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

* 흡수·세정시설(스크러버)의 경우,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[단, 부착 시 18만원(부착 비용의 60%) 추가 지원]

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구성 및 사양

○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구성

구 분	장치의 기능	비 고
측정기기	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	
IoT 게이트웨이	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·무선 방식으로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	
가상사설망 (VPN)	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- 측정기기(IoT 게이트웨이) 또는 통신장치(통신모듈)에서 SSL (Secure Socket Layer)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- 장비 호환성·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	
IoT 관리시스템	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 시스템 (www.greenlink.or.kr), 운영기관 : 한국환경공단 ※ 문의사항 연락처 : 1533-3301	

○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

-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,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(KOLAS) 성적서(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)와 측정기기 사양서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(한국환경공단)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

<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>

구분	전류계	차압계	온도계	pH계
설치대상	- 배출시설(공통) - 방지시설(공통)	- 여과집진시설 - 흡착에 의한 시설		- 흡수에 의한 시설
측정범위 ¹⁾	0 ~ 600A	0 ~ 500mmH ₂ O	-40 ~ 100℃	0 ~ 14pH
오차 ²⁾	±5% 이내			
동작온도 ³⁾	-20 ~ 60℃	-20 ~ 60℃	-20 ~ 60℃	0 ~ 80℃
온도보상	-	-	-	0 ~ 50℃ ⁴⁾
운용전원	DC24V(100 ~ 220VAC), 60Hz			
공통사항	(출력신호 ⁵⁾ 4 ~ 20mA (표시장치 ⁶⁾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(내구성) 실내·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			

- 1)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.5배 이내를 권장(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)
 -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
 - 차압계,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
 - 2) 공인시험기관(KOLAS) 성적서의 평균 오차(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)
 - 3)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. 단,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
 - 4)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
 - 5)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
 - 디지털(유선) 통신 방식(RS-232C, RS-422, RS-485)을 이용하는 측정기기
 -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
 - 6)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같음할 수 있음
- ※ 전류계, 차압계,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
- ※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[배출시설(배출 1, 배출 2), 방지시설 송풍기(송풍 1, 송풍 2), 방지시설 순환펌프(펌프 1, 펌프 2), 전기집진시설(전기 1, 전기 2) 등]을 표식하여야 함